직무청렴계약제 운영 규정

제정 2012. 6.21 개정 2013. 9.17 시행 2013. 9.24 개정 2018. 4.25 시행 2018. 4.30 개정 2022.10.26 시행 2022.11. 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'공사'라 한다)의 직무청렴계약 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반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의 적용은 공사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(이하 '임원'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2 장 직무청렴계약제

제3조(직무청렴계약) 공사 사장과 감사는 선임 비상임이사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직무청렴계약서를 체결하며 공사 상임이사는 공사사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사 사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. <개정 2022.10.26.>

- 제4조(계약의 시기 및 기간) ①임원은 공사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.
 - ②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기간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.
- 제5조(계약내용) 계약내용에는 직무청렴 준수 내용, 의무준수 기간, 청렴의무 위반심의, 위반 시 제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- 제6조(청렴의무 위반시의 제재)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의 종류 및 수준은 공사의 보수·인사·복지제도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.
- 제7조(계약위반 여부 및 제재의 심의) 계약을 체결한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위반에 따른 제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 사회가 정한다.
 - 1. 계약위반내용이 해당 임원의 재직기간 중 발생했는지 여부
 - 2. 위반내용이 계약서상의 직무청렴의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 - 3. 그 밖에 위반내용의 직무관련성 및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등
- 제7조의2(의원면직 제한)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상임이사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3.9.17>
 - 1.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 - 2.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. 중징계의결

요구 중인 때

- 제8조(사무국) ①직무청렴계약제와 관련한 사무는 공사 감사실에서 담당하며, 공사 감사실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. 단, 감사실장 궐위 시 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사무국장의 역할을 담당한다.
 - ②사무국은 직무청렴계약 위반 임원에 대한 각종 제재의 이행여부 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, 직무청렴계약제의 운영현황을 이사회에 보 고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직무청렴계약은 이 규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3.9.17.>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직무청렴계약은 이 규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8.4.25.>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직무청렴계약은 이 규정

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22.10.26.>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 <개정 2018.4.25.><개정 2022.10.26.>

직무청렴 계약서

본 계약은 갑 (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임비상임이사)과 을 (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(감사)) 간에 체결한다.

을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'공사'라 한다)의 사장(감사)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관계 법령, 사규,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 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- 1.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·요구·약속하는 행위
- 2. 직위·비밀 등을 이용, 이권개입·알선·청탁 등을 수수·요구·약속하는 행위
- 3. 이권개입·알선·청탁 등을 수수·요구·약속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
- 4.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
- 5.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
- 6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에 저촉되는 행위
- 7. 기타 부정부패·청렴의무 위반·성희롱·품위훼손 등 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

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, 갑은 공사 이사회에서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을 심의· 의결 하게 하며, 을 및 관계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또한 위 반행위로 인해 일정이상 형의 판결을 받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.

- 1.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: 임원경력발급 일정기간 정지, 포상취소,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, 지급취소 또는 환수 등
- 2. 금고 이상의 형 판결 시 : 복리후생이용권 일정기간 정지, 파견 일정기간 정지,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 또는 지급 취소 등
- 3. 자격상실, 자격정지 및 벌금형 확정 시 : 포상수여 일정 기간 정지,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

을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재직기간 동안 직무청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00 년 00월 00일

"갑"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임비상임이사 "을"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(감사)

 (별지 제2호 서식) <개정 2018.4.25><개정 2022.10.26.>

직무청렴 계약서

본 계약은 갑 (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)과 을 (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상임이사(이하 '이사'라 한다))간에 체결한다.

을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'공사'라 한다)의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관계 법령, 사규,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행 위를 하지 않는다.

- 1.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·요구·약속하는 행위
- 2. 직위·비밀 등을 이용. 이권개입·알선·청탁 등을 수수·요구·약속하는 행위
- 3. 이권개입·알선·청탁 등을 수수·요구·약속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
- 4.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
- 5.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
- 6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에 저촉되는 행위
- 7. 기타 부정부패·청렴의무 위반·성희롱·품위훼손 등 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

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, 갑은 공사 이사회에서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을 심의· 의결 하게 하며, 을 및 관계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또한 위 반행위로 인해 일정이상 형의 판결을 받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.

- 1.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: 임원경력발급 일정기간 정지, 포상취소,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, 지급취소 또는 환수 등
- 2. 금고 이상의 형 판결 시 : 복리후생이용권 일정기간 정지, 파견 일정기간 정지,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 또는 지급 취소 등
- 3. 자격상실, 자격정지 및 벌금형 확정 시 : 포상수여 일정 기간 정지,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

을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재직기간 동안 직무청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00 년 00월 00일

"갑"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"을"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 ○ ○ ○ (인) ○ ○ ○ (인)